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575호

의 안 명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교육부

의 결 일 2021. 9. 6.

주 문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9월 6일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욱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별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 · 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2021. 9.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목 차

I.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5.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립대학 내 기성회비 제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로 통합
- 이에 따라 종전 급여성으로 지급되던 '기성회 수당'이 폐지되고, 실제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운영 중
 - *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대학회계 재원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교육·연구 비용은 교원에게 지급하고, 학생지도비용은 교·직원에게 지급(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 '20년 기준 12개 국·공립대에서 직원 4,908명에게 학생지도 비용 31,186백만원 지급('21. 4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매년 관례적으로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 ※ 전국 12개 국·공립대학 조사결과 약 53억원 규모의 부당집행, 부실운영 실태 적발

【 학생지도비 집행실태 조사결과('21. 3. 17 ~ 4. 16,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 활동 증빙자료 없이 부당 집행(39억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실적 제출(12억원)
-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시간내 활동에 대해 지급(96백만원)
- 부실한 실적심사로 학생지도비 부당 지급(52백만원)

- 이에 따라 학생지도 비용의 허위·부당 수령 근절을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공립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 3월 ~ 4월 학생지도비 집행실태 조사(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21. 5월 개선방안 마련
- '21. 5월 ~ 8월 기관협의 및 안전상정

II. 관련현황

□ 제도 도입배경

○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11. 9월)

- (문제점) 기성회비*를 징수목적과 다르게 인건비로 사용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급여보조성 경비로 과다 사용하는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초래
- (개선방안)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통합 징수하는 대학회계 도입, 교원 연구비 합리적 지급방안 마련, 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등

* (기성회비) 부족한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가 도입되고, 그 비용이 등록금에 포함('63년 도입, '99년 사립대는 수업료에 통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5. 3월)

- 기성회비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하는 대학회계 제도 도입(국고일반회계+기성회계 ⇒ 국가지원금 + 자체수입금(등록금))

□ 학생지도 비용 현황

○ (개 념) 기존 급여보조성 경비인 기성회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지도 활동 등을 실제 수행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비용 지급

※ 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회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지급방식) 개인별 활동계획과 실적 제출에 따른 비용 지급

○ (지급대상) 국·공립대학 소속 교직원(교원, 공무원, 대학회계 직원, 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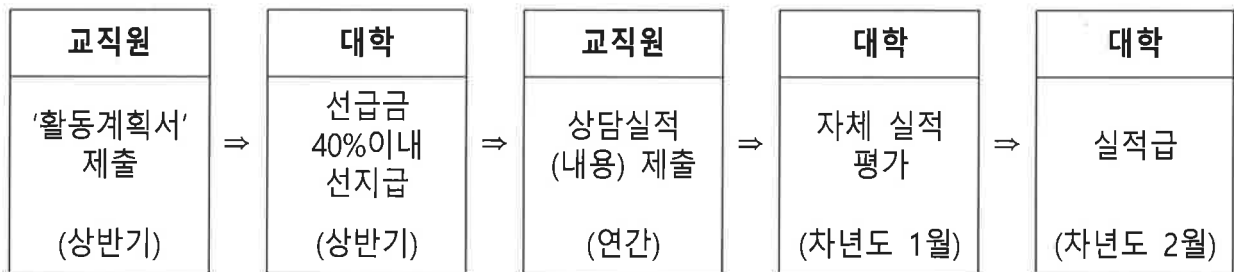
○ (지급기준) 통상업무* 및 상시적인 안전지도** 제외(대규모 행사 등 특별한 지도 필요시 인정), 급여보조성 경비 형태 지급 불가

* 통상업무는 급여로써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국립대학의 장이 별도로 부여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 비용을 지급

** 교내 대규모 행사 등 특별히 안전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운영

○ (관리방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인별 지급내역 관리, 부당지급 환수

○ (지급절차) 계획서 제출, 실적제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 기성회 수당과 학생지도 비용 비교 >

구 분	기성회 수당	학생지도 비용
편성원칙	대학자율	교육부 승인(재정건정성 확보, 학생부담 최소화)
지급회계	기성회 회계	대학회계(등록금 수입)
지급대상	교원, 공무원, 기성회 직원	교원, 공무원, 대학회계 직원
지급방식	직급별 정액 지급(월, 분기, 반기 등)	계획과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
지급액	A대학 : 12,912천원(10급) ~ 20,034천원(23급) B대학 : 6,002천원(10급) ~ 12,144천원(23급)	A대학 : 최대 9,000천원 B대학 : 최대 2,400천원
지급사유	정액연구비, 직무연구비, 교육수당 등 급여보조경비	학생상담, 멘토링, 행사지도 등 특수목적사업비용
지급근거	없음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기성회 규약)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운영시기	~ '14. 2학기	'15. 1학기부터 지급

□ 대학별 학생지도 비용 지급내역('20년 기준)

국립대학	학생지도 비용(백만 원)		
	총 지급액	인원(명)	기준액
경북대	5,659	670	9
공주대	1,444	257	6
교원대	1,039	182	7
방통대	4,600	708	7.5
부산대	4,591	714	6.6
부경대	2,925	353	9
순천대	1,173	187	7
시립대	547	226	2.4
전북대	3,103	568	6
충남대	1,973	316	6.6
충북대	2,300	310	8.5
제주대	1,832	417	6
계 (12개 대학)	31,186	4,908	-

※ '21. 3 ~ 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조사 자료

Ⅲ. 실태조사 결과(요약,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 부당 지급

- 8개 대학에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여 총 12억원 수급
※ 미참석자 대리서명, 퇴근·출장 중 활동실적 제출, 상담 횟수 부풀리기 등의 행태가 만연

☐ 실적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 없이도 학생지도비 부당 지급

- 학생 멘토링 상담을 음식점·카페 등에서 실시하고 실적관련 증빙(영수증, 사진) 없이 총 39억원을 집행
※ 멘토링 상담이 주로 주말, 휴일에 이루어졌으나, 증빙이 없어 활동 여부 불투명

☐ 지침을 위반한 학생지도 활동에 대해 비용 지급

- 지침에 반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이 근무시간에 취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총 44백만원을 지급
- 교수·조교의 통상적인 업무(학사안내 등)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학생지도비 52백만원 지급

☐ 허술한 실적심사로 학생지도비 부당 지급

- 이메일·메신저·전화상담을 통한 5분 내외의 짧은 대화에 대해 상담 실적으로 인정하여 17백만원 지급
- 국외 연수중인 교수에게 학생지도비 35백만원 지급

☐ 학생지도활동비 지급 과다 및 활동내용 부실

- 1회당 6~120만 원 지급, 허위 또는 단순 상담내용을 실적으로 인정
- 교직원 수당타먹기 수단으로 학생 이용 등

IV. 문 제 점

1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제도개선 권고 취지와 달리 학생지도비용 지급대상에 직원 포함

- '11. 9월, 「국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시 일반직원에게 대해 「공무원 보수규정」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

※ 감사원도 '11. 12월, 교과부 등 대상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 시 행정직원에게 대한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요청

<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한 기존 제도개선 요구사항('11. 9 ~ 12월) >

구 분	교원	직원
국민권익위	연구개발비로 지급 (급여보조성경비 폐지)	<u>지급 금지</u>
감사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급	<u>지급 여부 재검토</u>

- '15. 6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제도개선 권고 취지와 달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대상에 직원 포함

※ '15. 3. 26.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교원만 지급대상이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제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15. 4. 29. 재입법예고 시 직원을 포함

최초 입법예고 내용('15. 3. 26.)	변경된 입법예고 내용('15. 4. 29.)
제17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국립대학의 장은 <u>교원에게</u>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비등'이라 한다.)을 대학회계의 차체 수입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⑤(이하 생략)	제17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률 제28조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지급되는 등 제도개선 권고 취지 훼손

- 학생지도 항목 중 학생 상담, 행사지도는 직원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고, 근무시간외 업무는 시간외수당으로 보전이 가능함에도 사실상 기존 기성회계 수당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

< (참고) A대학 '20년도 학생지도비용 지급(안) 중 주요항목 >

세부항목	산출기초	한도액	비고
학생멘토링(직원)	횟수×20만원	500만원	1회당 6명 한도, 동일인 대상 20회 한도
동아리·스터디 지도	학생수×5만원	40만원	
공모전 등 지도	횟수×40만원	없음	수상시 추가 10만원 지급
학생지도 관련 행사	시간×10만원	30만원	1일 최대 30만원
외국인 멘토 활동	학생수×8만원	24만원	
현장실습 등 지원활동	횟수×20만원	없음	
진로 및 취업상담	횟수×10만원	없음	취업면접 지도시 횟수당 15만원
취업특강 및 세미나	횟수×100만원	없음	본부 기관장, 대학원장 사전 결재 필요

【 사례 :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나눠먹기식 운영('18.5월 언론보도) 】

- 비용으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수당'처럼 웬만하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규정상 통상업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순 안내 등 통상적인 업무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례 발생

【 근거 :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

-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 (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예산편성 기준) 】

- 상시적인 안전지도에 대한 실적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직원·조교의 경우 근무 시간(점심시간 제외) 내의 실적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 사례 : 통상업무를 실적으로 인정('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B대학)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제물 또는 교과목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단순 학사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학생지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
- (C대학) 공무원 조교의 본연 업무(수업·학적·졸업·장학 관련 상담) 및 교수의 통상 업무(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확인 등)를 실적으로 입력하여 학생지도비를 지급 받음(17명·169건, 16,900천 원)

【 사례 : 업무시간내 학생지도('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C대학) 자체적으로 「취업률 집중관리 지도 프로그램 개선 계획('18.4.)」을 수립, 학생이 원할 경우 교직원이 근무시간에 취업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 전체(87명)가 근무시간에 학생지도를 하고 총 44백만 원을 지급 받음

- 대학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사실상의 급여보전성 경비를 변칙적으로 지급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정 보수체계 무력화 우려**

【 참고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 자체 예산(등록금)으로 운영됨에도 직원에 대한 급여보전성 경비 추가 집행은 **학생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 사례 : 등록금 대비 직원 학생지도비용 지급실적('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주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실적 확인 결과 학생등록금의 6.5% ~ 10.5% 차지

대학	지급실적(백만원)				등록금 (C)	전체비율 (A/C*100)	학생지도 비율 (B/C*100)
	계(A)	교육	연구	학생지도(B)			
D대학	31,412	6,447	15,178	9,787	105,249	29.8%	9.3%
E대학	12,129	2,557	4,167	5,405	51,258	23.7%	10.5%
F대학	27,600	5,839	14,923	6,838	105,570	26.1%	6.5%

○ 학생 지원 사업임에도 비용 심사위원회 위원에 학생 미포함

-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연구, 검증, 학생의견 수렴 없이 교직원 개인의 활동계획만으로 신청 가능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예산편성 기준) 】

- 총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개인별 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이에 따른 실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별 차등지급하여야 함

- 심사단계에서도 학생은 배제하고 학내 구성원 간 공정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교직원만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

-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예산편성 기준) 】

- 총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구성) 모든 직종(교원, 직원, 조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별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

【 사례 : 대학별 심사위원회 위원(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H대학) 총장 방침으로 소위원회, 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조교 미참가
 - 소위원회(부서 : 처장·부처장, 원장·관장, 본부장, 각 과장 / 단과대 : 학(원)장, 소속 학부·과장)
 - 본위원회(대학원장, 처장, 단과대학장 등)
- (J대학) 지침(내규)로 분과위(교육, 연구, 학생지도 구분), 심사위 구성·운영
 - 교무처장·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연구기획부단장, 총무과장 등 15명 (총장이 처장 추천을 받아 분과별 2~3인 임명)

- 근로장학생 등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 편의 위주 활동으로 운영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

【 사례 : 교직원 편의 위주 운영 사례(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학생 멘토의 경우 멘토가 직접 멘토링 학생을 섭외하거나 상담이 쉬운 근로장학생 또는 지인의 자녀를 선정하고 대부분 식당·카페에서 내용 없이 가볍게 진행
- 1대는 직원 3~5명이 팀으로 멘토 상담이 가능하고, 참석인원 모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 직원 3명이 1명을 상담하고 각각 10만원의 비용을 수령

○ 부당수령 감시 과정에서도 학생이 배제됨에 따라 내부 적발 한계

- 심사위원회에서 각종 증빙서류로 실적을 심사하고 있으나,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등 의견 확인절차는 부재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예산편성 기준) 】

- 심사위원회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 서류로 엄격하게 실적을 심사하여야 함

- 일부만 학생 불만 접수 시 비용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대부분 운영실적에 대한 학생의견 확인절차 미운영

【 사례 : 학생 불만 확인제도 운영(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F대학) 신입생 멘토링, 진로·취업 등 학사멘토링 사업에 대해 불만접수 3회 이상 접수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 전액 환수 가능

※ '15년부터 운영하여 서면 외 전화·메일로 제기한 불만도 인정하고 있으며, '19년에 유학생 멘토링 과정에서 1차 불만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1차 경고 조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

- 학생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 허위자료 작성, 증빙자료 미비 등 각종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비용 수령이 가능한 구조

【 사례 : 허위자료 등을 통한 부당수령(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A대) 직원 4명이 코로나 19로 동아리 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지도를 하였다고 허위실적을 제출하여 4,700천원 수급
- (F대) 코로나 대응 학생안전관리지도 관련 퇴근이 확인된 교직원 50명이 업무 종료 이후 4시간(18시 ~ 22시) 동안 수행했다고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여 67,260천원을 받음
- (E대) 멘티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한 결과 학생 19명은 교직원과 상담이 없었거나 몇차례 뿐이었다고 답변하였고, 프로그램 취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
- (I대) 실적 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 교직원 다수와 학생 다수간 단체 멘토링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안전지도 프로그램은 별도 근태 관리가 없어 활동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실적을 인정
- (K대) 사무국장 등 19명이 미참석자 출석부 대리서명, 운영시간 단축 등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1,173백만원 수급
- (L대) 24명이 퇴근을 하고도 업무시간 내 안전지도를 했다고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여 2,858천원을 지급 받음
- (M대) 직원 28명이 퇴근을 하고도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여 24,914천원을 수령하고, 직원 5명은 평소 밀접한 관계인 근로장학생 등을 멘티로 선정하여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18,820천원을 수령

○ 허위·부당한 실적 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형식적인 심사

- 심사과정에서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허위자료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비용 지급 승인

【 사례 : 증빙자료에 대한 미확인(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A대학) 교직원 529명은 학교 주변 음식점·카페에서 학생지도(멘토링) 활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간단한 상담내용 외 실적 관련 증빙(영수증, 사진 등) 없이 총 2,087백만원 수령
- (I대학) 교직원 다수(3~5명)와 학생 다수(3~5명) 간 멘토링팀을 구성·운영함에도 별도 증빙자료(사진 등)를 요구하지 않아 단순한 상담일지만을 근거로 교직원 417명이 총 1,832백만원 수령

- 외부인력 없이 내부 구성원만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실적, 활동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도 미확인

※ 현행 지침상 내부 구성원(교원, 직원, 조교)만으로 심사위원 구성(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 사례 : 검증없이 부실심사(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전체 실적 49,338건 중 시간 미입력 및 20분 이내 상담은 55.1%(27,197건)를 차지(1회 상담 : 10만원)

< 학생 지도 기본사업 상담시간 분석 >

시간 미입력	5분 이내	6분~10분 이내	11분~20분	전체 상담건수
5,062회 (10.2%)	5,049회 (10.2%)	9,610회 (19.4%)	7,476회 (15.1%)	49,338건

- (D대학) 이메일·메신저·전화상담 등의 간단한 대화를 실적으로 인정하였고, 5분 내외 짧은 상담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부실심사 진행
- (B대학) 연구년, 국외연수 교수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는 등 검증절차 없이 52백만원 지급

○ 세 부 계 획·집행실적에 대한 형식적 공개로 내·외부 감시 한계

- 현행 규정상 계획·실적(현황)에 대한 공개 의무만 있을 뿐 항목별 세부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미흡

【 근거 :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

-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 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 대학별로 형식적으로 공개하거나 몇 년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단순 실적만 한번에 공개하는 사례도 발생

【 사례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공개실태('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F대학) 예·결산 공시 시기에 맞춰 계획과 실적(현황) 공개

2020학년도 비용 지급 계획 다운로드

예산 편성 현황(예산 기준)

(단위:천원)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세입액	예산액	비율(%)	세입액	예산액	비율(%)
115,453,613	27,773,114	24%	105,570,140	24,122,740	23%

세입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액을 의미함

예산 집행 현황(결산 기준)

(단위:천원)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세입액	집행액	비율(%)	세입액	집행액	비율(%)
128,988,398	27,071,010	21%	112,717,093	27,704,876	25%

■ (D대학) 전년도 계획 및 현황자료를 하반기(9월)에 공개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계획 등 공개

등록일 2020-09-15 13:06 작성자 교육팀 조회수 627 게시기간 2020-09-15 ~ 2021-02-28

*국립대학 평가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계획 및 예산 현황을 불입키 값이 공개합니다.

2020.9

- 첨임 1.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1부
2.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현황 1부

📎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0806) 학생과 변경지표 반영.hwp(4020736 bytes, 218 downloads) [다러보기](#)

📎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현황(공개자료).hwp(15360 bytes, 121 downloads) [다러보기](#)

I. 편성현황

(단위:천원)

학년도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입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편성액	비율(%)
2019학년도	117,933,635	31,411,706	26.6
2020학년도	114,249,850 ^{※1)}	31,411,706	27.5

* 주1)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인) 기준

II. 집행현황

(단위:천원)

학년도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입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집행액	비율(%)
2019학년도	117,933,635	31,411,704	26.6
2020학년도	114,249,850 ^{※1)}	사업 진행 중	

* 주1)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인) 기준

■ (E대학) 4개년도 실적('16~'19년)을 '20년 10월에 묶어서 공개(계획 미포함)

재정현황

2016~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집행 현황

분류 2019년도
등록일 2020-10-08 13:38:06
작성자 교육팀
조회수 56
첨부파일 2016학년도~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예산·집행 현황.xlsx [다러보기](#)

2016~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집행 현황

○ 형식적 승인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 요인 차단 한계

- 대학은 학생지도비용 등의 예산을 전년도 결산액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고, 증액할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 사전 승인 필요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예산편성 기준) 】

- 총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예산을 전년도 결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대학의 재정 건전성등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총 정원의 증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등 명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이전 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초과할 수 있되, 교육부장관의 증액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기준, 단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안내·승인이 없어 대학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인정시간, 횟수 등 실적인정 기준이 다르고 지급단가 또한 제각각

【 사례 : 대학별 학생상담 운영('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A대학) 직원 1명이 최대 학생 6명 기준으로 1회당 120만원 지급
- (I대학) 직원 1명이 학생 1명 기준으로 1회당 10만원 지급

< 학생지도비 중 학생상담 등 지급기준('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산출기초	지급한도액	비 고
A대학	상담횟수 × 인원 × <u>20만원</u>	<u>500만원</u>	1회당 6명 한도, 동일인 대상 20회 한도
D대학	상담횟수/28회 × <u>370만원</u>	<u>370만원</u>	상담실적을 동일하게 인정, 370만원 지급
F대학	인원 × 시간 × <u>10만원</u>	없음	2명 이상일 경우 학생당 50% 인정, 평일 3시간, 휴일 4시간 한도, 연 3회 한도
H대학	상담횟수 × <u>15만원</u>	<u>75만원</u>	1회 1~5시간 15천원, 5시간 이상 22.5만원
I대학	상담횟수 × <u>10만원</u>	없음	직원 3~5명 팀으로 학생상담 가능
O대학	시간 × <u>9만원</u> (10인 미만) 시간 × <u>12만원</u> (10인 이상)	<u>700만원</u>	교내(평일 3시간, 휴일 4시간 인정) 교외(평일 4시간, 휴일 4시간 인정)
P대학	상담횟수 × <u>10만원</u>	없음	1회당 2명 이내

- 학생이 선호하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간 지급단가 차이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순 상담 위주 운영 가능

【 사례 :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사례('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대학) 화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프로그램은 원예생명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화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멘토링 팀으로,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자격증 취득이라는 성과도 높으나,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일반상담과 동일하게 횟수당 10만원 지급

- 대학규모, 직원수가 비슷함에도 학교 간 학생지도비 집행실적과 1인당 지급액의 차이가 큰 편

【 사례 : 대학별 학생지도비 집행실적('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대학별 연간 집행실적이 최소 547백만원에서 최대 5,659백만원까지, 1인당 연간 수령액이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편차 발생

< 주요 대학 학생지도비 지급내역('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구분	총지급액(백만원)	지급인원(명)	1인당 평균 지급액(백만원)
경북대	5,659	670	9
부경대	2,925	353	9
부산대	4,591	714	6.6
서울시립대	547	226	2.4
제주대	1,832	417	6
충북대	2,300	310	8.5

○ 대학의 자율 운영에 의존, 관행적인 부당수령에 대응 한계

- 제도운명을 총괄하고,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해야 할 대학 간부(사무처장, 총무·교무·학생과장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율적 통제장치 작동 한계

【 사례 : 간부 직원 부당수령 사례('21. 3~4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실태조사) 】

- (E대학) 대부분 간부 공무원의 멘토링 대상 학생은 같은 사무실 근무하는 근로장학생으로 허위·부당 수령 의심(선정과정, 효과성, 답변 신뢰성 의문)
- (Q대학) 간부 위주로 조사한 결과 점심시간에 멘토활동을 한 것처럼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퇴근 이후의 안전지도 활동은 퇴근했다가 23시경 복귀하여 실적만 전산으로 입력하고 퇴근

※ L대학 등 7개 대학에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41명 허위·부당 수령 사례 적발

- 교육부가 대학 정기 감사시 부정수령 사례를 적발하고 매년 가이드라인에 관련 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조치는 개인 처벌에 그치거나 미흡한 수준

【 사례 : 교육부 위반사례 안내('21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가이드라인) 】

별첨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련 법령 등 위반 사례

- ▶ (사례) △△대학교에서는 교수 ○○○이 제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후 연구실적 제목만 변경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연구영역에서 실적금과 장려금 6,350천원을 지급(현장실태조사)
- ▶ (사례) △△대학교에서는 교원이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100~300점), 저서(200점)에 대하여 실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별도의 실적 없이 1점당 15천원(5,000천원 한도) 연구장려금 581,675천원을 이중 지급하였음(감사원 감사)

【 사례 : 부당수령 적발 조치결과('21.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R대학) '18년 종합감사 시 징계 처분자에 대한 부당 지급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관련비용 회수 조치

V. 개선방안

1 교원 외 학생지도 비용 지급 대상 축소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 비용 운영 금지

- '11. 9월 제도개선 권고 취지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 직원 중 공무원은 학생지도비용 지급대상에서 제외

【 (참고) '11. 9월 권고내용 :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전면 폐지 】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급여보조성 경비 등 지급 금지
 - 운영비·경상이전비 과목 등에 급여보조성 경비 편성 금지 등

- 대학회계 직원 중 과장급 이상 간부도 학생지도 비용 운영 관리와 부서 내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신설)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원 중 신분이 공무원인 자와 과장급 이상 직원은 제외한다.</u>

○ (중장기 정책제안) 전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지급제도 폐지 검토

- 계획 및 실적 심사·관리, 부담 수령 점검 등 학생지도비용 운영 관련 행정력 소모가 큰 만큼 관련 제도를 폐지 검토

※ 검토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운영방식 전환 검토

- (검토예시) 노사 합의하에 대학행정실, 학생과 등 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급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일정 수당 지급 방안 등

【 (참고) 초·중·고 관리수당 지급 사례 】

- 지방교육청 학교회계 예산지침에 의거 직급에 따라 학교 운영지원비 세입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 근무 직원(공무원, 구 학부모 등 직원)에 대해 일정액의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방법 개선 검토중
 - (서울시 교육청) 고등학교에 한해 직급별 월 47천원~67천원 지급
 - (경기도 교육청) 월 30천원 지급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 참여 의무화

- 학생의견 반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시 **학생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지도비용 영역 심사 시에는 **일정비율 이상 학생대표** 또는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참여** 보장(예시 : 1/3 이상)

【 (참고) 「고등교육법」 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2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00P) 】

- 총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구성) 모든 직종(교원, 직원, 조교, **학생대표**)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별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
- ※ 다만,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 반드시 학생대표(총학생회장 등) 또는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계획 및 사후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의무화

- 계획 수립 전 반드시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되, 세부 운영방식까지 사전에 검토
 -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 과정에서 직원과 동일부서에 근무 중인 근로장학생 등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은 제외하는 근거 마련
 - 프로그램 종료 후 반드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불만사례 발생시 지급비용을 감액 또는 환수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조치
- ※ F대학의 학생 불만 접수시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 사례 참고
-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기간 운영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고, 참여 학생 대상 이의신청(또는 실적검증) 절차를 운영하도록 의무 부여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2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02P) 】

■ 유의사항(내용추가)

- 계획 수립 전 반드시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되, 세부 운영방식까지 사전에 검토할 것
- 프로그램 운영 시 직원과 동일부서에 근무 중인 근로장학생 등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의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사업 종료 후 반드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불만사례 발생시 지급비용을 감액 또는 환수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것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운영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고, 참여 학생 대상 이의신청(또는 실적검증) 절차를 운영할 것

○ 계획·실적 심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심사과정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일정비율 참여 의무화(예시 : 1/4 이상)
- 실적심사 시 상담일지 등 단순 기록자료 외 학생 참여 확인서, 활동 사진, 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심사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일정기간 외부 공개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2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00P) 】

- 총장은 -----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구성) 모든 직종(교원, 직원, 조교, 학생대표)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전체위원의 1/4이상이 되도록 하고, 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별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
 - ※ 다만,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 반드시 학생대표(총학생회장 등) 또는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회의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후에는 관련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하며, 회의 종료 후 일정기간(예시 : 10~15일간)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서류(결과 보고서 외 참여학생 확인서, 학생과의 활동사진, 카드 영수증 등 포함)로 엄격하게 실적을 심사하여야 함

○ 학생지도 비용 공개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

- 학생지도 비용 연간 지급계획, 예산 편성 및 전년도 집행현황을 **매년 5월말까지** 공개하도록 의무 부여
- 학생지도 비용 공개대상에 **세부 사업별 운영계획과 집행실적**(세부 사업별 참여인력, 운영 실적, 비용 지급액 등)을 포함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2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02P) 】

- 총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등을 **매년 5월말까지** 이전 회계 연도와 비교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함
- 공개하는 지급계획에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지급 기준과 **세부 사업별 운영계획을**, 공개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는 동 법률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금 세입 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율과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참여 인력, 운영실적, 비용 지급액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 학생 상담, 멘토링, 자격증 과정 안내, 교내 행사 지도, 견학·탐방 지도 등 학생지도 비용 지급 대상 항목 제시

※ 학생지도 내용과 상관없이 카톡, 메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단순 안내는 지급 항목에서 제외

- 원가분석, 물가정보 비교 등을 통해 매년 항목별 통일된 지급 단가 마련

- 예산 절감 및 대학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 기준 제시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VI.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 조치내용 및 조치기한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1. 학생지도 비용 지급 대상 조정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중장기 정책제안) 전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지급제도 폐지 검토	'22. 12월
2. 학생지도 비용 운영과정에 학생 참여 확대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 참여 의무화 ○ 계획 및 사후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의무화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21. 12월
3. 불법·부당 수령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 계획·실적 심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학생지도 비용 공개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4.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22. 12월

참고 1 관련 법령 및 지침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 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① 목적

동 가이드라인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 따라 총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② 정의

-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비용
 - 교직원의 특정한 활동 수행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 ※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매월/분기/반기/연간 지급한 급여보조성 인건비와 구별

③ 계획 수립

- 총장은 관련 법령과 동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학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 총장은 지급계획 수립 시 영역별로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한 지표 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표 설정에 유의하여야 함

○ 총장은 교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유사 사업의 경우 대학별 계획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총장은 교육부 및 대학 내 자체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④ 예산 편성

○ 총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예산을 전년도 결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대학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총 정원의 증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등 명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이전 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초과할 수 있되, 교육부장관의 증액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야함

⑤ 지급 대상

○ 총장은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부설학교 직원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인사교류 파견 등으로 대학에 근무하면서 활동 실적이 있는 파견 직원의 경우 비용 지급 가능

⑥ 지급 기준 마련

○ 총장은 대학별 여건 및 특성화 방향(예: 연구중심대학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함

- 교직원의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교육, 연구(산학협력 포함 가능), 학생지도 등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별 지급기준·지급액(지급 총액 및 일인당 지급 한도액 등) 및 지표별 단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난이도, 성격, 수반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되, 전년도 대비 단가 또는 일인당 지급 한도액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함

- 총장은 실적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비용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전년과 동일한 사항에 한하여 지급 계획 수립 이후 바로 시행 가능하며, 계획 시행과 함께 선급금 지급 가능

- 확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에 의한 영역별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지급계획서를 신청 받아야 함

7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총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구성) 모든 직종(교원, 직원, 조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별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

- (회의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후에는 관련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 서류로 엄격하게 실적을 심사하여야 함

- 다만, 심사위원회 위원 등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8 비용의 지급

- (개인별 차등) 총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개인별 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이에 따른 실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별 차등지급하여야 함

- 또한, 교직원의 일상적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에 따른 특정한 실적 없이 평가결과에 따라 최저기준에 의한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차등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지양해야 함

- (선급금 등)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계획서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일부 선급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불용처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후 잔여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하여야 하며 조정계수 등을 통해 잔여 예산을 모두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 (이중지급 금지) 근무시간외 활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책임시수초과 강의에 따른 초과강의료 및 출장비 등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내역 관리) 총장은 지급일자, 지급액, 실적 등을 포함한 개인별 비용 지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9 환수 조치

- 관련 법령(「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가이드라인 및 지급계획 등을 위반*하여 지급한 실적 비용에 대하여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 계획서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제출, 이중 지급,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이전 실적, 상시적인 안전지도, 신분변동자에 대한 활동기간 산정 부적정, 연구비 부당 수령, 통상업무, 과거 지도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등[별첨2 참고]

10 지급 계획 등의 공개

- 총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등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시에 이전 회계 연도와 비교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함
- 공개하는 지급계획에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지급 기준을, 공개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는 동 법률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금 세입 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율을 포함하여야 함

11 유의 사항

- 대학별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특정인(ex, 총장, 보직자) 및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지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음

-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및 난이도, 전문성, 실적의 성격, 수반되는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되,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예산 총액을 그대로 분할 지급하기 위한 단가는 정할 수 없음

< 지표별 단가 산정 시 유의사항 >

총장은 지표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표별 단가는 수정 보완하여야 함

1. 지급 단가를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 예산 총액을 총 지급 대상 수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
2.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산정한 경우
3. 지표별로 합리적인 최소 실적 인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등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정 영역의 실적을 다른 영역의 실적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없음
 - 교직원의 통상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종전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선급금의 경우 적정 범위 내(40%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획서 제출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선급금도 환수 처리해야 함
 - 신분변동자(신규, 퇴직, 휴직, 파견, 징계 등)의 활동 인정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실적비용 지급기준은 대학에서 마련해야 함
- ※ (예시) 정직 3월(징계)인 경우 활동기간에서 정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함
- 상시적인 안전지도에 대한 실적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직원 조교의 경우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 내의 실적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별첨 (생략)

참고 2 2020년 대학별 학생지도 비용 등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지급 계	영역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강릉원주대	7,207,767	1,842,582	2,559,782	2,805,403
강원대	20,431,540	4,984,060	8,841,822	6,605,658
경남과기대	5,086,194	939,200	1,644,754	2,502,240
경북대	31,411,702	6,447,039	15,177,919	9,786,744
경상대	19,292,180	2,165,025	12,277,005	4,850,150
경인교대	3,081,789	423,448	1,438,348	1,219,993
공주교대	1,718,878	361,500	868,918	488,460
공주대	12,129,348	2,556,776	4,166,877	5,405,695
광주교대	1,257,620	188,300	716,062	353,258
군산대	6,365,052	1,741,100	2,013,950	2,610,002
금오공과대	3,829,264	1,501,860	654,956	1,672,448
대구교대	2,369,198	662,690	861,429	845,079
목포대	5,745,262	1,652,850	1,483,424	2,608,988
목포해양대	1,976,012	492,841	449,056	1,034,115
부경대	19,811,671	3,873,450	9,577,358	6,360,863
부산교대	1,933,436	748,550	945,106	239,780
부산대	27,600,321	5,839,016	14,922,855	6,838,450
서울과기대	11,643,220	2,973,253	5,172,470	3,497,497
서울교대	2,374,241	437,581	860,738	1,075,922
순천대	5,564,144	1,487,350	1,200,688	2,876,106
안동대	4,878,088	1,036,833	1,803,048	2,038,207
전남대	29,013,678	0	24,340,849	4,672,829
전북대	22,428,351	2,095,997	15,610,764	4,721,590

(단위 : 천원)

대학명	지급 계	영역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전주교대	826,188	236,456	325,276	264,456
제주대	10,780,665	2,521,360	4,574,965	3,684,340
진주교대	1,510,669	377,070	618,045	515,554
창원대	7,250,265	1,591,891	2,262,578	3,395,796
청주교대	1,222,675	363,000	515,875	343,800
춘천교대	1,117,448	203,544	569,985	343,919
충남대	26,379,218	6,359,490	15,100,997	4,918,731
충북대	18,916,852	5,734,167	4,415,493	8,767,192
한경대	4,782,939	1,307,804	1,517,955	1,957,180
한국교원대	5,281,967	699,793	2,067,802	2,514,372
한국교통대	8,847,646	2,752,832	3,341,018	2,753,796
한국방송대	6,731,110	1,752,193	1,028,841	3,950,076
한국복지대	443,077	103,392	106,430	233,255
한국체대	1,617,688	365,152	761,793	490,743
한국해양대	5,744,713	1,304,725	1,866,382	2,573,606
한밭대	6,626,323	1,263,631	2,506,200	2,856,492
합 계	355,228,399	71,387,801	169,167,813	114,672,785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조사 자료

정 본 입 니 다 .

2021. 9. 8.

국 민 권 익 위 원



ACRC